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5258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문종욱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일

2. C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21. 8. 18. 매매예약 및 주식회사 D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22. 10. 19.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주식회사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19. 접수 제141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2. 10. 20. 접수 제1458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등기국 2022. 10. 20. 접수 제1458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2.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살피건대, 을나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8. 18.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광주 남구 E아파트 F동 중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2021. 8. 18. 당시 D의 소극재산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D 소유의 E아파트 중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적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따르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N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역시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피고들의 매매예약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 청구기각

판사 윤봉학

별지